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국 가 정 보 원 직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전문성 활용과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이 개정(법률 제18520호, 2021.10.19 공포, 2022.4.20 시행)됨에 따라 지원 업무의 실시 방법과 지원 세부사항(지원 범위·방식 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에 관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신설하고자 함.

가. 직무위탁 조항(案 제27조의2 제1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부사항 위임 조항(案 제27조의2 제2항)

지원범위와 지원방식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하도록 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案 제27조의3)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개정령안 2)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① 원장은 법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식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장은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27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u> ① 원장은 법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식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u>제2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u> 원장은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